경상남도 공고 제2023-518호

「2023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청년채용확대 및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금년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3. 6.

경 상 남 도 지 사

1.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 간 지원하는 사업

❍ 인증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선정절차

사업 공고		신청		사전심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		심사 선정		인증서 교부		지원협약 체결
투자경제 진흥원 (3월)	⇨	중소기업 (3월)	⇨	투자경제 진흥원 (3월)	⇨	투자경제 진흥원 (4월)	⇨	민간 실사단 (4월)	⇨	선정 위원회 (5월)	⇨	경남도, 투자경제 진흥원 (5월)	⇨	투자경제 진흥원 (5월)

* 현장실사 시, 민간전문가(청년평가단 포함) 참여

*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31.(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본사)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인증기한이 유효한 인증을 대상으로함

※ 인증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인증(2020.1.1.~)을 유효한 인증으로 간주함

* 공공기관 인증제 현황 예시

구 분	고용 우수기업	스타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	메인비즈 (경영혁신)	벤처기업
인증기관	경남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기업부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미인증 기업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최근 5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3. 심사 · 선정

❍ 선정방법

구 분	평가방식
사전심사	○ 절대평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의한 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도 청년일자리담당 및 투자경제진흥원 서면심사 ○ 평가배점(100점) : 기업 경영상태 및 안정성 등 ○ 선 정 : 선정목표의 1.5배 선발, 배제사유 기업 탈락조치
1차 서면심사	○ 절대평가 : 사전심사 통과기업 대상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의한 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도 청년일자리담당 및 경제진흥원 서면심사 ○ 평가배점(50점) : 임금수준 및 일자리 창출성 등
2차 현장실사	○ 상대평가 : 사전심사 통과기업 대상 증빙서류에 따른 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현장실사단 기업방문 면담 및 현장점검 ○ 평가배점(50점) : 근무환경 및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실태 등
선정위원회 의결	○ 상대평가 :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성적 평가 후 의결 ○ 평가방법 : 선정심사위원의 의결 ○ 최종선정 : 서면심사(50점) + 현장실사(50점) 총점 상위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심사위원의 의결로 선정

○ 심사배제 대상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기타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 부적합 판단 기업[참고 1]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법정 보장제도(육아휴직, 성희롱 예방 등) 부재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C이하(또는 최저등급)인 기업
- 재무제표 확인서 상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심사기준 및 배점

가. 사전심사

구 분	평가항목	증빙서류	배점
합계			**100**
기업 기본정보	기업정보 및 구비서류 일치여부	-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	5점
청년친화기업 자격여부	공공기관 인증 개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공공기관 인증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5점
기업 경영상태	매출액 성장률 및 자본잠식기업 여부	- 재무재표 확인서(손익계산서 포함)	20점
고용 창출	전체 직원 중 청년 비중	- 최근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0점
기업 안정성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율 확인서	20점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점

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구 분		평 가 항 목(서면 50점, 현장 50점)	배점(점)	서면심사	현장실사
합계			**100**	**50**	**50**
임금수준	초임임금	신입사원 초임임금 수준	5	○	
	임금상승률	최근 3년간 임금상승률	5	○	
	성과급	기업별 성과급 지급 수준	5	○	
	부가급여 (가점)	교통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지급여부 등에 따라 최대 3점 가점	3	○	
고용창출	청년고용 증가율	최근 2년간 청년 고용증가율 및 증가인원 ※ 외국인근로자 제외	5	○	
안정성	인적 안정성	채용 청년 중 정규직 비중 ※ 외국인근로자 제외	10	○	
	기업 안정성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및 매출액 성장률	10	○	
고용 유지율	청년 고용유지율	청년근로자의 2년간 평균 고용유지율	10	○	
기타	추가사항 (가점)	경남사랑상품권 법인 구매실적 여부	1	○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여부 (고용우수기업, 경남형 트랙 등) ※ 단, 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 등 국비 인건비 지원사업은 제외	1	○	
기업 성장잠재력		경영자 인터뷰 및 기업소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기업 성장 잠재력 파악	10		○
근로환경 및 복지		기업 주위 환경 확인 및 작업장 내 근로 환경 확인 (위험성 여부 및 복리후생 공간 등 확인)	10		○
조직문화 등 청년친화 노력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 노력, 노사 상생 및 청년 친화를 위한 인터뷰(사업주 및 재직자 인터뷰)	10		○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실태		육아 지원제도 운영실적(최근 2년 간, 남녀 휴직현황),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최근 2년 간 신규채용자 명단),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육아휴직 복귀자 인터뷰	10		○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자기개발	교육비, 교육제도, 사내 동호회 운영, 해외연수 등 자기개발비 지원 여부 (취업규칙에 따른 직원 교육제도 제외)	5		○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차량,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유무, 체육시설, 육아시설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 여부	5		○

4. 제출서류

가. 참여 신청시

○ 제출 서류

-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공공기관 인증서 ※ 고용우수기업, 스타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확인]
-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21~'22년 비교자료 필수)
- 최근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확인]

※ '22. 03. 07. ~ '23. 03. 06. 기간 지정 후 제출 /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
-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나이스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 취업규칙(파일로만 제출)

○ **신청방법 : 제출서류(서식 1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e-메일과 우편(방문)으로 모두 제출**

- (e-메일) song89@giba.or.kr
- (우편 또는 방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층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 우편 및 방문 제출은 3. 31.(금)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나. 사전심사 후

○ 제출 대상 : 신청한 기업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30개사

○ 제출 서류

- 재직기간 1년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 (최근 1년 간, 채용 1년차에 한함)
-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

-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
-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확인]

※ '21년·22년 각 1건(1.1.~12.31.) 및 '23년 1건(1.1.~3.6.) 제출

※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

-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 업무관련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숙사 등 복지후생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 포함)
- 일 · 생활균형제도(육아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경남사랑상품권 법인 구매실적 거래확인증
-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인증서 또는 확인증
- 기타 평가항목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층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 제출기한 : **사전심사 결과 발표 후 5일 이내(주말 제외)**

다. 문의처 :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055-230-2934)

5. 인증기간 및 지원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근무환경개선 지원	· 근무환경개선 지원 - 최초지정지원금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1회 지원 (단, 작업환경개선비 80%, 기업자부담20%) ※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연도에 한해 1회 지원	일자리 경제과

<table>
<tr><td></td><td>- 채용연계지원금 : 청년 1인 채용 시 최대 1,000만원(5명 한도),
여성재직자 30%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td><td></td></tr>
<tr><td>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td><td>· 청년인턴 지원 : 최대 18개월
- 육아휴직 전 3개월 ~ 복직 후 3개월 까지
- 기업당 최대 5명
※청년인턴 임금 :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2023년 시급 11,021원)</td><td>일자리
경제과</td></tr>
<tr><td>추가고용 장려금</td><td>· 추가고용 장려금 :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시 50만원, 6개월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 기업당 최대 5명</td><td>일자리
경제과</td></tr>
<tr><td>청년노동자
주거안정 지원</td><td>· 청년노동자 주거안정 지원 : 월 최대 30만원, 1년간
- 기업당 최대 10명
- 월세/전세/전월세(유리한 방법 청년 선택)</td><td>일자리
경제과</td></tr>
<tr><td>경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td><td>·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 0.4~1.0점 적용
- 청년 고용비율 증가율 또는 신규 청년 고용 수에 따라 차등
<table>
<tr><th>청년고용비율</th><th>신규 청년 고용수</th><th>배점</th></tr>
<tr><td>40% 이상 증가</td><td>4인 이상</td><td>1.0</td></tr>
<tr><td>30% 이상 증가</td><td>3인 이상</td><td>0.8</td></tr>
<tr><td>20% 이상 증가</td><td>2인 이상</td><td>0.6</td></tr>
<tr><td>10% 이상 증가</td><td>1인 이상</td><td>0.4</td></tr>
</table></td><td>회계과</td></tr>
<tr><td>노무컨설팅 지원</td><td>·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지원 : 노동상담, 권리구제, 컨설팅 등
- 청년친화기업 및 소속 재직 노동자</td><td>노동
정책과</td></tr>
<tr><td>금융우대 혜택</td><td>· 기업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
- 농협 : 일반기업 대비 최고 1.5% 우대
- 경남은행 : 일반기업 대비 최고 1.7% 우대</td><td>농협
경남은행</td></tr>
<tr><td>채용 매칭DAY
운영지원</td><td>· 청년 채용매칭DAY 운영 지원
- 일자리프렌즈,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합동채용행사 추진
- 채용 이후 재직청년대상 직장적응 및 직무향상 멘토링 지원</td><td>일자리
경제과</td></tr>
<tr><td>홍보 서포터즈 지원</td><td>· 청년친화기업 맞춤형 홍보 지원
- 홍보 서포터즈 운영(10명 내외)
- 기업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청년친화기업 사업 홍보</td><td>일자리
경제과</td></tr>
</table>

6. 업체 선정/통보 : 2023. 5월(예정) /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노동 관련 법(근로기준법 등) 및 환경 관련 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심사 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함.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055-230-2934)**으로 문의

서식1 청년친화기업 신청서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 명	
홈페이지			생년월일	
주 소(본사)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종 ※ 해당업종에 √표시	□ 정보통신업 □ 제조/건설업 □ 서비스업/기타			
주요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직급	/	E-mail		

* 자본금, 연간매출액 :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공공기관 인증서(2023년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

연 번	인증서명	인증기관

3. 부가급여 추진 현황

종류	① 교통비	② 정액급식비	③ 가족수당	④ 복지포인트
여/부				
종류	⑤ 문화바우처	⑥ 스톡옵션	⑦ 청년내일채움공제	⑧ 기 타
여/부				

⑧기타 내용서술( )

4. 자기개발비 지원 현황

종류	① 교육비 지원	② 교육제도 운영	③ 동호회 운영 지원	④ 해외연수 지원
여/부				
종류	⑤ 기 타(내용 서술)			
여/부				

5. 복리후생

종류	① 기숙사	② 통근차량	③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④ 체육시설
여/부				
종류	⑤ 육아시설 (어린이집 등)	⑥ 기 타 (내용 서술)		
여/부				

본인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집과 관련한 모든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기재·미제출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기업체명 대 표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에 대한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체크 필수**

▶ 동의 시 확인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 시 등록 및 연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경남청년 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4.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선정 및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첨부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 2.법인등기부등본, 3.중소기업확인서, 4.공공기관인증서, 5.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재무제표확인서, 6.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7.산업재해율확인서, 8.신용평가등급증명서

서식2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점검 목록

1. 참여 신청시 제출 목록

* 반드시 연번(증빙) 편철 순서로 확인 및 제출

연번 (증빙)	내 용	확인여부
1	지원신청서[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중소기업 확인서	
5	공공기관 인증서	
6	국세 완납증명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 '21년, '22년 각 1부씩	
9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조회기간: '22. 03. 07. ~ '23. 03. 06.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11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참고 2)	
12	취업규칙(전자파일로 이메일제출)	

2. 사전심사 후 제출 목록

* 반드시 연번(증빙) 편철 순서로 확인 및 제출

연번 (증빙)	내 용	확인 여부
1	재직기간 1년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 - 최근 1년 간, 신입채용 1년차에 한함	
2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	
3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	
4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5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확인] - '21년·22년 각 1건(1.1.~12.31.) - '23년 1건(1.1.~3.6.) 제출 **※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	
6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7	업무관련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육 지원 제외	
8	기숙사 등 복지후생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사진 포함)	
9	일·생활균형제도(육아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10	경남사랑상품권 법인 구매실적 거래확인증	
11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인증서 또는 확인증 ※ 단, 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 등 국비 인건비 지원사업은 제외	
12	기타 평가항목 증빙서류	

참고1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심사 배제대상 업종

업종분류	업종	분류코드
1.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여관업	55112
	나. 그외 기타 숙박업	55909
	다. 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라.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마. 기타 주점업	56219
	바.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19
	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마.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9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골프장 운영업	91121
	나.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다. 무도장 운영업	91291
	라.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9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이용업	96111
	나. 두발미용업	96112
	다. 피부미용업	96113
	라. 기타미용업	96119
	마. 욕탕업	96121
	바. 마사지업	96122
	사.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9

비고 : 업종분류, 업종,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2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평가방법 안내

❍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야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청년친화기업 심사대상 여부	비고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대상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비대상	

주1)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참고3 청년친화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출항목(예시)

지원유형	분류	지원가능 예시	유의사항
청년재직자 사내복지 개선 [시설개선]	사무공간-개선	사무실 리모델링 등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사무공간-가전	공기청정기,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노트북) 등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휴게실-개선	휴게공간, 화장실 등 리모델링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휴게실-가전	커피머신	* 커피 - 캡슐커피 (연간 계약 렌탈의 경우, 가능) - 원두 (계약에 의해 배송받는 경우, 가능)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냉장고, 정수기 안마의자, 게임기, TV 의류관리기 등	* TV - 휴게실만 인정 (회의실, 사무실 비치는 불인정)
	휴게실-건강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휴게실-비품	테이블, 소파 등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휴게실-도서	사내도서관용 도서구입	구입도서 목록 첨부
청년재직자 사내복지 개선 [개인복지]	1. 개인복지 관련 지출은 청년재직자에 한해 지원함. (지급 시점 만34세 이하/거주지 경상남도 내) 2.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출관련 내부품의, 회계정산서로 증빙되어야 함. 3. 모든 지원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서는 안됨. 4. 현금성 지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계좌이체로 항목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함. 5.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원되지 않음. 6. 개인복지 관련 지출은 회사내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함.. 7. 개인복지관련 지출시 구비서류 : 회사내규		
	축하금-기념일	졸업・결혼・출산・생일 등	기념일 증빙서류 첨부
	지원금-휴가비	휴가비	전년대비 휴가비 상향 및 내규로 정해지는 경우 가능
	지원금-교육	자기개발비	교육이수증 첨부

지원유형	분류	지원가능 예시	유의사항
청년재직자 사내복지 개선 [개인복지]	지원금-건강	건강검진비	검진확인증 첨부
	복지포인트	경남사랑상품권	회사내규로 정해지는 경우 가능 *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주거독립	이사비	이사비용 증빙
	기숙사 운영	기숙사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불가 월 임대료는 가능 – 계약서 첨부 * 청년노동자 주거안정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청년,여성 친화기업 문화개선	교육 운영	강사료, 교재비 등 - 직무교육 - 신입교육 - 법정교육 등	- 간식비, 식음료는 불가 - 영수증 첨부
	동호회	활동비	- 증빙가능 항목만 가능, 영수증 첨부 (식음료는 불가)
	조직문화 워크숍	교통비, 숙박비, 강사료 등	- 업무용 워크숍은 지원 불가 (간식비, 식음료는 불가) - 해외워크숍의 경우, 교통비(항공료)는 청년재직자에 한함.
장기 재직지원 제도운영	* 지원자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기업부담금 환급 발생시, 환수분에 한해 근무환경개선금으로 계획을 세워 고지 후, 사용하고 재 정산하여야 함. * 장기재직지원은 협약일 이후 지원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또는 정부지원금	- 최대 12개월간 지원가능 (청년재직자만 가능)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또는 정부지원금	